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5. 31 선고 2022나11861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5. 31 선고 2022나11861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가합3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문성운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영

변론종결 2023. 5. 3.

판결선고 2023. 5. 31.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가합3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제주지방법원 2019. 4. 8. 접수 제308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4. 2.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21. 5.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제주지방법원 2019. 4. 8. 접수 제308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주지방법원 2021. 5. 20. 접수 제456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1. 5.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제주지방법원 2021. 5. 20. 접수 제456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신, 판사 류지원, 판사 강동훈

별지